

| 차근차근 배우는 노동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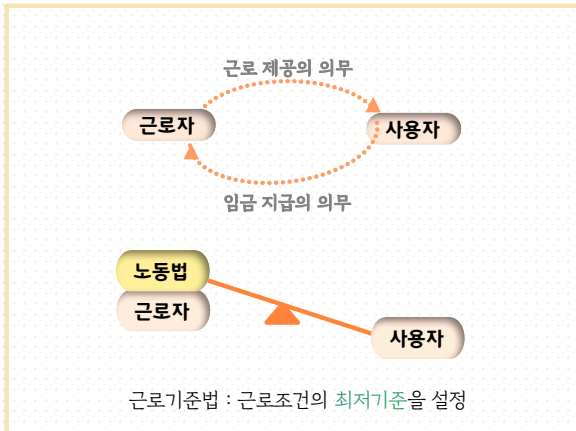
10월 노동법 _ 모든근로, 모든임금(1)

공인노무사 이 지혜



따져보기

조목조목 따져보는 근로기준법



다가가기

근로시간은 무한정 늘릴 수 있을까?

법령

- ▶ 제46조 (휴업수당)
- ▶ 제47조 (도급 근로자)
- ▶ 제48조 (임금대장)
- ▶ 제49조 (임금의 시효)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 제50조 (근로시간)
 - ▶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 ▶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 제54조 (휴게)
 - ▶ 제55조 (휴일)
 - ▶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제57조 (보상 휴가제)
 - ▶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 ▶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 제63조 (직종의 제외)
- ▣ 제5장 여성과 소년
 - ▶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
 - ▶ 제65조 (사용 금지)
 - ▶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 제67조 (근로계약)
 - ▶ 제68조 (임금의 청구)
 - ▶ 제69조 (근로시간)

관 규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은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관 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 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관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 법정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 1주 40시간

2.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의 합의 / 1주 12시간

3.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연장근로가 휴일의 경우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5,000원)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000원)

연장근로를 했다.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 초과근로, 잔업, OT(over time)





따져보기

연장근로를 했다.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 이름 : 김폴복

■ 시급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정근로시간	8	8	8	8	8	무급휴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2	2	2	2	2		2
전체근로시간	52						

① 1주 40시간 ↑, 1일 8시간 ↑

따져보기

연장근로를 했다.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 이름 : 김폴복
- 시급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정근로시간	8	8	8	8	0	무급휴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8			
1주 근로시간	40						

② 1주 40시간, 1일 8시간 ↑



따져보기

연장근로를 했다.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 이름 : 김폴복(통상근로자)

■ 시급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3일 근로, 1주 24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정근로시간	8	0	8	0	8	무급휴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2		2		2		
1주 근로시간	46						

㉓ 1주 40시간 ↑, 1일 8시간 ↑



따져보기

연장근로를 했다.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 이름 : 김폴복
- 시급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정근로시간	8	8	8	8	8	무급휴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12
1주 근로시간	52						

④ **주휴일**에 12시간을 연장근무한 경우

따져보기

연장근로를 했다.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최종복씨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 확인해볼 사항은 무엇?!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정근로시간	8	8	8	8	8	무급휴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2	2	2	2	2		
1주 근로시간	50						

1. 일한 시간만큼 당연히 지급받음!
2. 연장근로한 해당시간에 0.5배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 step 1. 단시간근로자인가?
- step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가?
- step 3.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인가?



따져보기

연장근로를 했다.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 이름 : 김폴복(단시간 근로자)

■ 시급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정근로시간	6	6	6	6	6	무급휴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2	2	2	2	2		
1주 근로시간	40						

1. 일한시간만큼 당연히 지급받음!

2. 연장근로한 해당시간에 0.5배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step 1. 단시간근로자인가? 근로자의 동의 필수!



따져보기

연장근로를 했다.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 이름 : 김폴복(통상 근로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시급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정근로시간	6	6	6	6	6	무급휴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2	2	2	2	2		
1주 근로시간	40						

1. 일한시간만큼 당연히 지급받음!
2. 연장근로한 해당시간에 0.5배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step 1. 단시간근로자인가?

step 2. 5인 이상의 사업장인가?

step 3.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인가?



따져보기

연장근로를 했다. 나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 이름 : 정돌복(통상 근로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시급 10,000원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정근로시간	8	8	8	8	8	무급휴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12
1주 근로시간	52						

▲ 1주 40시간을 넘고, 주휴일 1일 8시간이 넘는 경우

- Q. 정돌복 씨는 주 40시간을 넘어 12시간을 일요일에 일했습니다.
정돌복 씨가 받게 될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요?

주휴일에 12시간 일한 경우는, 휴일근로의 8시간이 넘는 시간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9~12시간 사이는 100% 가산한다=8*15000+4*20000=20만원

따져보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대상/시간 범위)

연장근로의 유형

-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 : 당사자간의 합의
- 18세 미만 근로자 : 법정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 근로자 본인의 동의(1일 1시간, 1주 5시간)
-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동의,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
- 출산(유,사산 포함) 1년 이내
 - 1주 6시간(1일 2시간, 1년 150시간 초과 금지)
- **임신 중** 근로자
 - 원칙 : 연장근로 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허용한 경우
 - 1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명시적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



따져보기

해가 지면 야간근로?!

■ 연장근로의 요건 : 당사자간의 합의

- 서면합의 아닌 **구두**합의도 가능!
-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등 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의 근로.

■ 야간근로 계산해보기

박 돌복 씨의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한 박 돌복씨.

오늘은 잔업이 많아 오후 12시(자정)까지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박 돌복 씨가 지급받을 임금은 얼마일까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풀이)

- ▷ 박돌복 씨의 소정근로 : 8시간 = $10000 \times 8 = 80,000$ 원
- ▷ 박돌복 씨의 연장근로 : 법적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 오후 6시 ~ 오후 10시 : 4시간의 연장근로 = $4 \times 10000 \times 1.5 = 60,000$ 원
 - 오후 10시 ~ 오후 12시(자정) : 2시간의 연장/야간근로 = $2 \times 10000 \times 2 = 40,000$ 원
- ▷ 임금 총액: 180,000원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시간 **4시간** : 휴게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 휴게시간 **1시간 이상**

■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해야한다.

Q. 8시간 근로하는데요, 근무가 너무 바빠서 틈틈이 쉬고 따로 휴게시간을 주기 어렵다면서 손님 없을 때 쉬라고 하는데요. 대신 손님 없을 때는 30분 일찍 집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이 있는 건가요?

■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Q.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손님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휴게시간인가요 아닌가요?

따져보기

주휴수당

관 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규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
-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소정근로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
-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고용된 곳이라면 업종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 만근이 조건이 아님 : 조퇴나 지각이어도 출근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text{시급 통상임금} = \frac{\text{(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 합계}}{\text{(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따져보기

통상임금이 무엇인가?

$$\text{시급 통상임금} = \frac{\text{(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 합계}}{\text{(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5}}$$

(1) 분모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휴일(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x 4.345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2) 분자 : 통상임금에 반영되어야 할 임금 항목의 합

- 명목상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됨.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무효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소정근로시간	8	8	8	8	8	무급휴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text{시급 통상임금} = \frac{\text{(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 합계}}{\text{(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5}}$$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x 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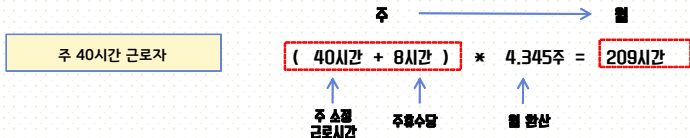
$$= \{(8+8+8+8+8)+8\} * 4.345$$

$$= 209 \text{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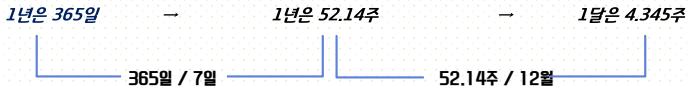
따져보기

근로시간 계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수당의 댓가



※ 매월 일하는 일수는 다르지만, 매월 임금은 동일 ▶ 월 평균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



따져보기

통상임금이 무엇인가?

■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기준과 예시

통상임금 요건	내용
①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노-사간 사전에 약속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함
② 정기적으로 지급 되었을 것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③ 일률적으로 지급 되었을 것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④ 고정적으로 지급 되었을 것	<u>임의의 시점에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u>

구분	통상임금 (채직조건 확인 필요)
기본급	포함
식대	고정액 지급이면 포함 (설비가 아니면)
직무수당	포함
유류비	고정액 지급이면 포함 (설비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	미포함
상여금	지급이 확정적인 경우까지 포함
가족수당	포함
명절휴가비	약정 혹은 관행이면 포함
근속수당	포함
연차휴가수당	미포함



따져보기

수습근로자라며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수습/인턴의 경우 임금

Q.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일단 일하는 거 보고 3개월 뒤에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말씀이 사실인가요?

A. 잠깐! 먼저 확인할 것! **단순노무업무**인가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해당한다면 수습근로자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예) 오토바이 운전원, 패스트푸드 조리원, 상점 진열, 상점판매원

다음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 설정 가능합니다.

STEP 1.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라고 명시

STEP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STEP 3.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것

(최저임금법 제5조)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
가산임금을 더해 1.5배 지급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가산임금 지급 받을 수 있다.
3. 주휴수당의 요건? ①1주 15시간, ②개근, ③다음주 출근예정
4.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률적 조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5. 수습근로자라고 하여 무조건 최저임금 미달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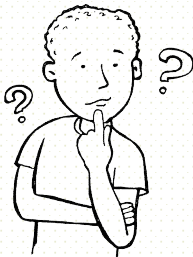
“퇴직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어요”

“기본급이 ●●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넘는지 궁금해요”

“연차유급휴가 갯수 좀 알려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하고 있는데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11월의

차근차근 노동법 : 모든 근로시간, 모든 임금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
런치노동법에서 해결해드릴게요.
공인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문의사항

Phone : 02-308-1220

E-mail : workingmom0915@gmail.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epworkingm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를 검색하세요!